

2026년도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6년 8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	-------------	--	-------------	--	--------	--	--------	--	--------	--

2026년도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목 차

I. 과업설명서

II. 과업지시서

III.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IV. 설계예산서

V. 산출근거

I . 과 업 설 명 서

I. 과업설명서

1. 목 적

본 과업은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시행하여 본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견실 시공을 도모하고자 함

2.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 1) 공 사 명 :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
- 2) 공사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인근해역
- 3) 공사개요 : ◦ 항로준설 : 1,542천m³ ◦ 부대시설 : 1식
-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개월
- 5) 공 사 비 : 195,716백만원

3. 과업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71개월

5. 설계변경조건

-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 2) 공사중지 및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용역기간이 변동되었을 때
- 3)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필요할 때
- 4)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5)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6)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II.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 1)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07.08.)에 의한다.
- 2) 동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지침이 개정되면 동 과업지시서를 개정 또는 변경한 것으로 본다.

2. 건설사업관리업무 처리원칙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 관련 서류와 당해 공사 관련 각종 지방서 등을 비치하고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여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기관장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추진 단계별로 시기적절한 확인과 검측을 하여 엄격한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공·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의 장(공사관리관 경유)에게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공사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부재시에는 주된 공종분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감한다.
- 5)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본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개개인의 업무분담내용 등의 건설사업관리계약내용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6) 상주기술인은 계약된 근무기간 중에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7) 건설사업관리업무 종사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불성실하거나 적정치 아니라고 인정될 때 발주청은 이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 8) 발주청은 현장의 제반 기술사항을 검토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응하여야 한다.
-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이나 시공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공사중지를 지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처리계획을 지체 없이 “공사관리관”을 경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중지사항에 대하여 중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0)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가. 규칙 제 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나.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 준설공사 특성상 시공 중 현장여건 변경으로 인한 사항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기관에 보고

라.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마.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바.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4. 기타사항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사업수행능력평가지 제시한 참여기술인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구성하여야 하며, 건

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및 인원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초과 투입된 기술인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별도 보고 하여야 하며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사업관리대상공사의 규모 및 공정에 적합하도록 선정,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 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대상공사의 공종별 시공여건과 계절별 기후 또는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과 관련 건설사업관리근무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정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추진공정의 형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시기를 조정 시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전체 투입 인/월 범위내에서 조정될 경우 설계변경 없이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현장내에 사무실을 두고 발주청 및 공사관리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6)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석재, 토사 등)에 대하여 유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피해를 입히는 등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소속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

해 건설사업관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6.2.)에 따른다.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8조(보고서 작성, 제출)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는 사업관리보고서(월간, 최종)를 CD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월간보고서 : 2부
- 최종 종합보고서(준공시) : 5부
- 유지관리지침서(준공시) : 5부

5. 특별사항

계약상대자는 매년 배정된 예산에 의하여 공사발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1)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 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 4)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 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5)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 6)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부처 또는 각종 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8)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9)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10)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 11)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건설사업관리 월간보고서(월1회)

- 공사추진현황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 품질시험·검사현황
-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打設) 현황(작업자 명부 포함)
- 검측 요청·결과통보 내용
-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受拂) 내용
- 공사설계 변경 현황
-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 현황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 공사사고 보고서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 1회 (건설사업관리 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분야별 기술 검토 실적 종합

- 공사 추진내용 실적
- 검측내용 실적 종합
-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 품질시험·검사 실적 종합
- 주요 자재 관리실적 종합
- 안전관리 실적 종합
- 종합분석

3) 유지관리지침서 : 1 회(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및 특기사항

Ⅲ.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Ⅲ.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공 종 월 별			사 업 기 간																								비고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	48	51	54	57	60	63	66	69	72	
상 주 기 술 인	책임 기술인	특급기술인 (항만 1인)																									71개월
	분야 기술인	초급기술인 (항만 1인)																									71개월
	분야 기술인	초급기술인 (안전 1인)																									71개월
	분야 기술인	초급기술인 (항만 1인)																									19개월
기 술 지 원 기 술 인	특급 기술인	항만 및 해안																									71개월
	특급 기술인	토질 및 지질																									71개월
	특급 기술인	토목 구조																									71개월

IV. 설 계 예 산 서

2026년 8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	-------------	--	-------------	--	------------	--	------------	--	------------	--

2026년도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 용역개요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총 용역비 : 6,200,000,000원

공급가액 : 5,636,363,637원

부 가 세 : 563,636,363원

V. 산출 근거